

보도시점 2024. 1. 10.(수) 09:00 (2024. 1. 10.(수) 석간)

최근 5년간 사다리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자 2백명 넘어

- 고용노동부·안전보건공단, 1.10. 제1차 현장점검의 날 운영
- ‘추락’ 사고유형 중 ‘사다리’ 위험요인 집중 점검

고용노동부(장관 이정식)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(이사장 안종주)은 1월 10일 2024년 제1차 현장점검의 날을 맞이하여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을 점검하면서, 특히 “추락” 사고유형 중 “사다리” 위험요인을 집중적으로 확인하고, 안전수칙을 안내한다고 밝혔다.

* ▲ (추락) 비계, 지붕, 사다리, 고소작업대, ▲ (끼임) 방호장치, 정비 중 운전정지(Lock Out, Tag Out), ▲ (부딪힘) 혼재작업, 충돌방지장치(붙임1 참고)

최근 사다리에서 작업하던 중 추락하여 사망한 사고가 다수 발생하였는데, 대부분 1~2m 내외의 높이에서의 추락이었다. 사고의 원인은 주로 사다리에서 발을 헛디디거나 사다리 자체가 파손·미끄러지는 경우다. 최근 5년간 사다리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자 수는 2백여 명이다.

* ▲'23.12.24. 설비 위 이물질 제거를 위해 A자형 사다리로 올라가던 중 2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
▲'23.12.26. A자형 사다리 위에서 창호 설치 중 사다리가 미끄러져 3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
▲'24.1.1. A자형 사다리 위에서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 제거 중 1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
▲'24.1.3. A자형 사다리 위에서 소방배관 설치작업 중 1.8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

이동식 사다리를 사용하는 경우, 반드시 턱끈을 포함하여 안전모를 철저히 착용해야 한다. 이외에도 작업 전에는 ▲평탄·견고하고 미끄럼이 없는 바닥에 ▲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다리를 지지하게 하는 등 미끄럼·넘어짐 방지조치를 해야 한다. 작업 시에는 ▲2미터 이상에서는 반드시 안전대를 착용해야 하며, ▲사다리의 최상부 발판 및 그 하단 디딤대에서의 작업은 금지된다. 다만, 이동식 사다리 작업은 작업발판 또는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3.5미터 이하의 A자형 사다리에서 작업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.

* 붙임 2 「사업주가 꼭 알아야 할 이동식 사다리 주요 작업안전수칙」 참고

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“사다리 작업은 간단한 작업이라고 인식하고 안전수칙을 경시하는 경우가 있다. 그러나 연간 30여 명 이상이 사다리로 인해 사망하고 있다. 아무리 간단한 작업이어도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.”라고 당부했다.

- 붙임: 1.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 안내자료
 2. 이동식 사다리 핵심안전수칙

담당 부서	산재예방감독정책관 안전보건감독기획과	책임자	과 장 김 동 현 (044-202-8901)
		담당자	서 기 관 용 윤 서 (044-202-8902) 사 무 관 이 철 호 (044-202-8904)
담당 부서	산업안전보건정책관 산업안전기준과	책임자	과 장 박 원 아 (044-202-8850)
		담당자	사 무 관 김 영 남 (044-202-8853)



출근에서 퇴근까지
안전하고 건강한 일터,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한

중대재해 발생의 62.6%를 차지하는

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 특별관리



